

**1 명령 요청서(양식 FL-300)를 이용하세요.**

- 법원 심리 일정을 잡거나 법원에 귀하의 사건에 관해 신규 명령이나 명령 변경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. 요청은 양육권, 방문(면접교섭), 아동 양육비, 배우자 또는 파트너 부양비, 재산, 재정,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, 또는 기타 문제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.
- 심리 후 금지 명령(양식 DV-130)에서 법원이 결정한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것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까 (양식 DV-400-INFO)를 참조하세요.

**2 명령 요청서(양식 FL-300)를 이용하지 마세요.**

- 소송을 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입니다(양식 FL-300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).
- 귀하와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.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, 어떻게 법원 승인을 받는지, 그리고 어떻게 귀하의 소송에서 제출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<http://www.courts.ca.gov/selfhelp-agreeFL>를 보거나, 변호사와 상담하거나, 또는 귀하의 법원 Self-Help Center나 가족법 지원 사무실에 문의하세요.
-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때 특별 사법위원회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.
  - 가정 폭력금지 명령을 위해서는 양식 DV-100, DV-109, DV-110을 사용하세요.
  - 모욕에 관한 명령에는 양식 FL-410을 사용하세요.
  - 아동 양육비 명령을 취소하려면 양식 FL-360 또는 양식 FL-640을 사용하세요.
  - 자발적인 친자 또는 부계 관계 포기는 양식 FL-280을 사용하세요.

**3 양식 체크리스트**

- 양식 FL-300, 명령 요청서는 법원에 제출 시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. 귀하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양육권 또는 방문(면접교섭) 명령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양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- FL-105, 통일 자녀 양육권 관할 및 집행에 관한 법에 따른 진술서(Declaration Under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)
  - FL-311,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(면접교섭) 신청서 첨부 문서(Child Custody and Visitation (Parenting Time) Application Attachment)
  - FL-312, 자녀 납치 방지 명령 신청서(Request for Child Abduction Prevention Orders)
  - FL-341(C), 자녀 공휴일 일정 첨부 문서(Children's Holiday Schedule Attachment)
  - FL-341(D), 추가 조항—물리적 양육권 첨부 문서(Additional Provisions—Physical Custody Attachment)
  - FL-341(E), 공동 법적 양육권 첨부 문서(Joint Legal Custody Attachment)
- 만약 아동 양육비 변경을 원한다면, 다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.
  - 현재의 FL-150, 수입 지출 신고서(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). FL-155 양식의 2페이지에 기재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FL-150 양식 대신에 양식 FL-155, 재정보고서(약식)(Financial Statement (Simplified))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배우자 또는 파트너 부양비 또는 재정에 관한 명령 변경을 원한다면, 다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.
  - 현재의 FL-150, 수입 지출 신고서(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)
  - FL-157, 배우자 또는 파트너 부양비 진술서 첨부문서(Spousal or Partner Support Declaration Attachment)(부양비 판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)
-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명령 발부를 요청하려면, 다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.
  - 현재의 FL-150, 수입 지출 신고서(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)
  - FL-319,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신청서 첨부 문서(Request for Attorney's Fees and Costs Attachment)(또는 위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)
  - FL-158,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증빙 신고서 첨부문서(Supporting Declaration for Attorney's Fees and Costs Attachment)(또는 위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)
- 임시 긴급 명령(일방적)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.
  - FL-305, 임시 긴급 명령서(Temporary Emergency Orders) 임시 긴급 명령 제안서 역할.
  - 임시 긴급 명령 요청서에 관해 어떻게 언제 통보하였는지 설명한 진술서 양식 FL-303, 임시 긴급 명령(일방적) 요구의 통보 및 송달 관련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(Declaration Regarding Notice and Service of Request for Temporary Emergency (Ex Parte) Orders).
  - 지방 법원이 요구하는 그 외 양식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이 양식의 3페이지 9번 항목을 보세요.
- 심리에서 증인들이 증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.
  - FL-321, 증인 목록(Witness List)
- 쟁점에 대하여 별도 재판을 원하는 경우(절차분리), 다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.
  - FL-315, 별도 재판 요구 요청서 또는 답변서(Request or Response to Request for Separate Trial)

**4 양식 FL-300(1페이지)을 작성하십시오**  
**설명:** 맨 위 칸에 이름, 주소, 전화 번호, 이메일 주소(있는 경우)를 정자 또는 타자로 기재하십시오. 두번째 칸에는 법원 주소를 기재하십시오. 세번째 칸에는 신청인 이름, 피고 그리고 기타 부모/당사자(있는 경우) 이름을 기재하십시오. (당사자 이름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). 명령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, 네번째 칸의 “**변경**”을 체크하십시오. 심리 날짜까지 적용되는 긴급 명령을 법원에 요청을 원하면, “**임시 긴급 명령**”에 체크하십시오. 귀하가 원하는 명령에 해당되는 모든 칸에 체크하십시오. 우측 칸에는 사건 번호를 기재하십시오.

**항목 1:** 귀하의 소송에 참가한 다른 당사자들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. 경우에 따라, 소송의 당사자인 조부모, 지역 아동 지원 기관, 또는 소송에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**항목 2:** 이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두십시오. 나중에 법원 서기가 심리 날짜, 시간 및 장소를 기입합니다.

**항목 3:** 이는 이 소송의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입니다.

**항목 4-5:** 이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두십시오. 법원이 심리를 명령하는 경우에 법원이 작성합니다.

**항목 6:** 어떤 카운티에서는 법원 서기가 항목 6에 체크하고 귀하에게 필요한 아동 양육권 조정 또는 추천 상담 예약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려줍니다. 다른 법원들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가 양식 FL-300을 제출하기 전에 예약을 한 다음 항목 6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. 법원의 가족법 지원자 또는 Self-Help Center에 문의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아보십시오.

**항목 7-8:** 이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두십시오.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작성합니다.

**5 양식 FL-300(2- 4페이지)을 작성하십시오**

**6 추가 양식을 작성하고 사본을 만드십시오**  
**명령 요청서** 제출 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작성하십시오. 전체 패킷에 대해 최소한 2부 이상의 사본을 만드십시오.

**참고:** 항목 3, 4, 6에 답변하기 위해 양식 FL-150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**7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**  
 작성한 서류 및 사본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. 법원에 직접 가져가거나, 우편으로, 또는 전자식(일부 카운티의 경우)으로 제출하십시오. 법원 서기는 명령 요청서의 첫번째 페이지에 제출 일시와 스탬프를 찍은 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되돌려줍니다. 임시 긴급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, 진행 절차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**8 제출 수수료**  
 제출 수수료는 신청 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.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, 그리고 유효한 수수료 면제 명령이 없는 경우, [양식 FW-001](#),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서(Request to Waive Court Fees) 및 [양식 FW-003](#),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서(Order on Court Fee Waiver)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

**임시 긴급(일방적) 명령**  
(비가정 폭력 금지 명령)

법원은 가족법 사건에서 법원 정식 심리 날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 긴급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.

긴급 상황은 소송 당사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 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, 또는 재산에 대한 손실이나 피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.

이 명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.

- 양식 FL-300을 작성하십시오 심리 전에 임시 긴급 명령이 필요한 사유와 긴급 상황을 기재하십시오.
- 임시 명령 요청을 위해 양식 FL-305을 작성하십시오.
- 상대방에게 귀하의 요구사항과 심리에 대하여 어떻게 언제 통보하였는지에 대한(또는 왜 통보하지 못했는지)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(양식 FL-303 참조).
- 지방 법원이 요구하는 그 외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도 작성하십시오.
- 심리일 예약, 서류 제출, 제출 수수료 지불 관련하여 귀하의 법원의 해당 절차를 따르십시오.

10 **“송달”에 관한 일반 정보**

송달은 소송의 당사자로 기재된 모든 사람들이 귀하가 신청하는 명령의 종류 및 심리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법적 서류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.

상대방이 적절하게 송달받지 못하면, 판사는 심리일에 귀하가 요구하는 명령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.

11 **명령 요청서와 해당 공양식을 송달하십시오.**

다음과 같은 서류를 해당 당사자에게 반드시 “송달” 하여야 합니다.

-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 명령 요청서 및 다른 모든 양식과 첨부 문서의 사본.
- 승인된 임시 긴급 명령의 사본.
- 공양식 FL-320, 명령 신청에 대한 답변 진술서 (Responsive Declaration to Request for Order).
- 공양식 FL-150, 수입 및 지출 신고서 (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) (FL-150 또는 FL-155 양식을 송달한 경우).

12

**문서를 “송달”할 수 있는 사람**

귀하는 서류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. 송달인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“송달인”은 친구, 귀하의 소송과 관련이 없는 친척, 보안관 또는 전문적인 송달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.

13

**“직접 송달”**

직접 송달은 귀하의 송달인이 직접 당사자들을 방문하여, 해당 당사자 본인을 확인한 후, 관련 모든 서류를(공양식 포함)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만약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, 송달인은 당사자 근처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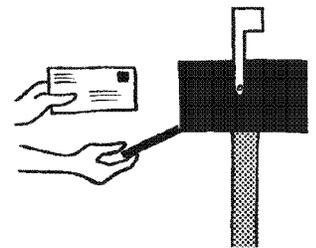


참고: 때때로 가족법 소송에서는 서류가 상대방 당사자 변호사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는 경우 (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)도 있습니다.

14

**“우편 송달”**

우편 송달은 귀하의 송달인이 모든 해당 서류(공양식 포함)의 사본을 봉투에 밀봉하여 각 당사자의 송달받을 주소로(또는, 만약 당사자에게 변호사가



있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변호사) 우편 발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

송달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.

**중요 사항!** 만약 직접 송달 또는 우편 송달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거나 귀하의 법원 가족법 지원자나 <http://www.courts.ca.gov/selfhelp-courtresources.htm>의 Self-Help Center에 문의하십시오.

15 언제 직접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을 이용하나요

**직접 송달**

직접 송달은 귀하의 소송에서 상대방이 올바르게 교부 받았는지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때때로 반드시 직접 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법원이 하기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 귀하는 반드시 직접 송달을 해야 합니다.

- 직접 송달을 요구하는 경우
- 임시 긴급 명령을 승인하는 경우
- 상대방이 아래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:
  - 소환 및 신청서\*를 송달 받은 적이 없거나

또는

-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출두한 적이 없는 경우
  - a. 청원에 대한 답변서
  - b. 출두, 합의서 및 포기서
  - c. 서면 출두 통지
  - d. 청원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삭제 요구 또는
  - e. 사건 이송 요구

\*참고: 명령 요청서는 가족법 소환 및 청원과 동시에 송달될 수 있습니다.

1. 송달 후 송달인은 반드시 직접 송달 증명서 (양식 FL-330)를 작성하고 귀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. 송달자가 지침이 필요한 경우, 직접 송달 증명서 정보 시트(양식 FL-330-INFO)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2. 작성된 직접 송달 증명서를 서기 사무실(또는 귀하의 법원에서 가능한 경우 전자 파일 전송)로 심리일로부터 최소한 5 개정일 전에 제출하십시오.

**송달 기한:** 법원이 다른 기한을 명령하지 않는 경우 직접 송달은 심리 날짜로부터 16 개정일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.

**우편 송달**

직접 송달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우편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.

**중요 사항!** 귀하의 소송에서 우편 송달 진행 가능 여부는 귀하의 가족법 지원자 또는 Self-Help Center에 문의하거나,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양육권, 방문(면접교섭), 또는 아동 양육비 등의 소송 판결이나 최종 명령 변경을 위한 명령 요청서는 다음 경우에 우편 송달할 수 있습니다.

- 임시 긴급 명령을 포함하지 않은 문서인 경우
- 법원이 직접 송달 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
- 상대 당사자의 현재 거주지나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경우 (주소 확인 관련 진술서(양식 FL-334)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)

배우자 또는 파트너 부양비를 포함한 기타 다른 소송의 판결 또는 최종 명령 변경을 위한 명령 요청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합니다.

1. 송달 후 송달인은 반드시 직접 송달 증명서 (양식 FL-335)를 작성하고 귀하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. 송달자가 지침이 필요한 경우, 우편 송달 증명서 정보 시트(양식 FL-335-INFO)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2. 작성된 직접 송달 증명서를 서기 사무실(또는 귀하의 법원에서 가능한 경우 전자 파일 전송)로 심리일로부터 최소한 5 개정일 전에 제출하십시오.

**송달 기한:** 법원이 다른 기한을 명령하지 않는 경우 우편 송달은 심리 날짜로부터 최소 16 개정일에 5 일을 추가한 날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(송달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진행되는 경우). 캘리포니아주 이외 지역의 송달은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.

16 법원 심리의 준비

- 귀하의 문서와 제출된 양식 사본의 최소 2부 이상을 심리일에 지참하십시오. 송달 증명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다음 웹사이트에서 심리 출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<http://www.courts.ca.gov/1094.htm>.
- 상대방의 법정 진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<http://www.courts.ca.gov/29283.htm>.

17 심리 후, 양식 FL-340, 심리 후 판결 및 명령서에서 행해진 명령은 반드시 제출되어 송달되어야 합니다.

18 추가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

- 캘리포니아 지역 변호사 협회(<http://calbar.ca.gov>), 또는 변호사 추천 서비스 1-866-442-2529에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.
- 무료 또는 저가 법률 지원(자격이 있는 경우)은 <http://www.lawhelpca.org>를 참조하십시오.
- 추가 정보 및 지원, 그리고 지역 법률 지원 업체 알선은 가족법 지원자 또는 Self-Help Center에 문의하십시오. <http://www.courts.ca.gov/selfhelp-courtresources.htm>를 방문하십시오.